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4230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00조,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393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423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1. 10. 18 선고 2000나10301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AA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AB, 김A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A
담당변호사 이BA)

【피고,상고인】 이C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 1. 10. 18. 선고 2000나10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 인사이에 대환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자 AA금융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는 1991. 9. 26. 주식회사 파DA다면세백화점(이하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회사에 필요한 단기운용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하는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1993. 2. 22. 거래한도를 17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때 피고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회사에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93. 2. 22.까지 총 2억 5천만 원, 추가로 1993. 2. 23.에는 8억 원, 1993. 3. 24.에는 1억 원 등 총 11억 5천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어음거래를 해오다가, 1994. 3. 24. 위 어음할인금 중 2억 5천만 원이 상환되자 그 때부터는 총 9억 원을 유지하면서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던 사실, 원고와 회사는 회사가 할인 받은 각 어음의 만기가 되면 다시 위 회사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킹DB종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종전 어음금액 상당의 새 어음으로 종전 어음을 맞바꾸면서 처음 위와 같이 어음할인금이 11억 5천만 원일 때부터, 중간에 2억 5천만 원을 상환한 것 이외에는 실제 채무는 변제하지 않은 채 그 지급기일만 연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은 장부에 지급기일연장의 의미로 '회전', '개서', '보증', '연장', '濟' 등의 용어들로 표기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와 회사 간의 어음거래가 계속되던 중 1997. 4. 7.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여행사 발행의 어음금액 9억 원, 발행일자 1997. 4. 7. 지급기일 같은 달 17일로 된 약속어음에 위 회사의 배서를 받고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종전 어음과

맞바꿨고, 이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했으나 발행인인 위 여행사의 부도로 지급거절 된 사실, 이후 원고는 1999. 9.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어음할인 채무의 물상보증인들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원금 9억 원 중 480,398,208원을 배당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회사는 기존에 할인 받은 어음의 만기가 되면 이를 변제하고 다시 위 회사나 위 여행사 발행의 새 어음을 할인 받는 식으로 각 어음마다 개별 할인거래를 하여 기존의 어음할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는 피고가 위 회사를 사임하고 위 연대보증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회사의 어음할인거래는 기존 어음과 그 상당금액의 새 어음을 맞교환 하면서 형식상 기존 채무가 변제된 것인 양 장부에 기록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2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추가 원금의 변제 없이 이자만 지급해온 것으로, 결국 원고와 위 회사로서는 기존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그 지급기일만 연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9억 원의 어음할인채무는 그 마지막 어음 맞교환 때인 1997. 4. 7.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거래 한도를 증액하고 거래최고액인 11억 5천만 원을 할인했을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1993. 11. 26.경 원고에 이사 사임을 통지하고 위 연대보증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 어음할인채무는 그 해지 이전인 피고가 위 회사에 재직중일 때 이미 발생한 채무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 변론에서 피고는 위 회사의 폐업과 위 회사의 이사직 사임 등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회사와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등 참조),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